중흥S-클래스

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

◆인지세 안내

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(1억원 이상~10억원 이하 : 15만원)를 납입하신 후 정부수입인지를 아파트 등기 시 반드시 등기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.

1. 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 *(관련법령)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

- **과세대상 :**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
- **납부기한·방법 :** [분양계약] 계약체결일
  [전매] 명의변경 승인일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

2. 정부수입인지 구입처

① 온라인 전자수입인지 사이트(e-revenuestamp.or.kr)
② 우체국 · 은행

3. 가산세 개정사항 ('21.1.1.부터 적용)

- **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:** 무(과소)납부 세액의 100%
- **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:** 무(과소)납부 세액의 200%
- **6개월 초과 :** 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

※ 정부수입인지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여야 하며, 등기시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 공급계약체결시 정부수입인지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※ 정부수입인지는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자 이전에 발행한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.

◆인지세(전자수입인지) 구매방법 안내

1 해당 홈페이지 접속 – 전자수입인지(e-revenuestamp.or.kr) 또는 네이버 검색창 "전자수입인지" 검색

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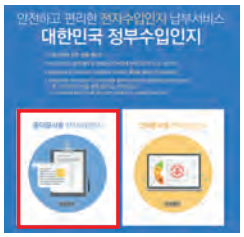

3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
4 구매 – 납부정보 입력

① 용도 : 인지세 납부
② 과세문서종류 : 1.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
③ 금액 : 150,000원
④ 건수 : 1건
⑤ 확인 및 결제

5 출력

*전자수입인지는
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
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
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재발행 불가)